

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·공시 등)에 따라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9. 10. 31.

수 원 시 장



1. 2019. 7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가. 기 준 일 : 2019. 7. 1.

나. 결 정 일 : 2019. 10. 31.

다. 공시사항 :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(원)

라. 공시필지 : 1,124필지

•장안구 : 188필지 •권선구 : 513필지 •팔달구 : 194필지 •영통구 : 229필지

2. 공시지가 열람

가. 수원시청 홈페이지(www.suwon.go.kr) > 세금 > 지방세 > 개별공시지가

나.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www.realtyprice.kr)

다.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

3. 행정사항

-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서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작성하여 **2019. 10. 31.~12. 02.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**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